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 112 제출일자 : 2008. 6. 12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신청사 부지매입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반영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
- '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'가 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
-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.

2. 주요골자

○ 기금운용 변경계획(안)

(단위: 백만원)

기 금 명	변 경	당 초	증 감	비고
합 계	3,161	208	2,953	
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	68	0	68	
청사건립기금	3,093	208	2,885	

○ 세부내용 :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참조

3. 근거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